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433
- 발 의 자 : 유정인 의원(찬성자 21명)
- 발 의 일 : 2026년 2월 9일
- 회 부 일 : 2026년 2월 12일

### 2.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지자체의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책무, 기부의 날·기부 주간 규정 등이 신설된 바, 주요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예우 원칙과 철회 기준을 마련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익과 공공의 신뢰에 기반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의 날, 기부 주간,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예우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마.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6. 2. 20. ~ 2. 24.)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이라 함)은 2024년 1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책무, 기부의 날·기부주간 규정 등이 신설되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예우 원칙과 철회 기준 마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의3(기부의 날·기부주간 및 포상 등) 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모집자,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기부의 날, 기부주간 행사,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종전의 규제 중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부의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의 날, 기부주간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 계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자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개정하여 법률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2024년 1월 30일 일부개정하였고, 7월 31일 시행되었음.
- ※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1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률명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정된 법률명과 핵심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신뢰 하락, 법적 안정성 및 효율성 저해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현행 조례(「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 체계가 목적(제1조), 시장의 책무(제1조의2), 적용범위(제2조), 정의(제3조) 등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자치법규의 체계는 보통 목적,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2)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에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353-354면 참조).

### 〈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명	-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제1조(목적)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기부금품”, “예우”를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노력
제4조(적용 범위)	-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기부금품 기탁한 자에게 적용
제5조(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규정 -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기념 행사, 포상 등(제1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제2호), 기부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제3호),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호)
제6조(기부자 예우)	- 기부금품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 발급(제1항) - 기부자 예우 규정(제2항), 각종 행사 초청(제1호),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1)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84면 참조.

	증정(제2호), 시 발행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제3호), 시 관리·운영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제4호),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친 사항(제5호)
제7조(기부자 예우 사후관리)	- 예우 철회 규정 -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제1호), 범법 또는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2호), 그 밖에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로 정하는 경우(제3호)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규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규정
제11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 규정
제12조(의견청취 등)	-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출석 의견청취 규정
제13조(수당)	- 위원회 위원과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수당 지급 규정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일반적 경과조치와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 본 전부개정안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다만, 2024년 1월 중전의 법률명(「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sup>2)</sup>로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조례에 개정된 법률명과 핵심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본 개정안을 통해 개정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법률 제20154호, 일부개정 2024. 1.30., 시행 2024. 7.31.

## 나. 세부내용 검토

### 1) 조례의 제명과 목적 등(제명 및 안 제1조~제2조)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조례의 규율 내용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조례의 제명에서 표현하고 있음.

※ 조례의 제명은 그 조례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그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341면 참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를 통하여 서울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전 부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u>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 다음으로, 정의 규정은 조문 위치를 조정(제3조 → 제2조)하고, 현행에서는 “예우”만을 정의하고 있었으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기부금품”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호)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 예우 대상과 절차의 투명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전 부 개 정 안
<p>제3조(정의) <u>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의한 기부금품을 말한다.</li> <li>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 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li> </ol>

<p>「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기부금품”이란 <u>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li> <li>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li> <li>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li> <li>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li> </ol> </li> </ol> <p>「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li> <li>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li> <li>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li> <li>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li> <li>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li> </ol> </li> </ol>
---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 2)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는 개정된 상위법과 맞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에게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성숙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시장의 책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전 부 개 정 안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u>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u> 노력하여야 한다.

-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에서는 법의 규율을 받는 기부(법 제5조제2항 제1호)와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기부(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를 같이 규정함으로써 적용 대상 및 법체계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바,

- 조문 위치를 조정(제2조 → 제4조)하고, 안 제4조는 법의 규율을 받는 기부 (법 제5조제2항제1호)만 적용 범위로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 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법 제5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2항제1호는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고, 제3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적용 배제)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에 열거된 다른 법률에 따라 모집되는 기부 금품은 이 법의 등록, 심사, 사용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1. 「정치자금법」                  | 2. 「결핵예방법」      |
| 3. 「보훈기금법」                  | 4. 「문화예술진흥법」    |
|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7. 「재해구호법」                  |                 |
|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
|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현 행	전 부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3) 기부문화의 활성화(안 제5조)

- 안 제5조는 법의 개정 사항(법 제3조의3)인 기부의 날, 기부주간 등에 근거 규정(안 제5조제1호) 신설하여 기부의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전 부 개 정 안
제5조의2(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기부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포상 등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기부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p>「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3(기부의 날·기부주간 및 포상 등) 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모집자,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기부의 날, 기부주간 행사,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최근 3년간 기부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부 건수는 2023년 129건에서 2025년 157건으로 약 21.7% 증가하였으나, 현재의 기부는 기업 및 단체 등 대규모 기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

- 이는 경기 변동에 따라 전체 기부금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 기부자 유입 정체에 따른 기부문화 확산의 한계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신설을 통해 기부 참여 주체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서울시 기부자 현황 〉

(25.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개인		단체		기업		공공 기타	
	건수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157	10,799	23	464	59	5,102	69	4,799	6	434
2024	133	11,049	18	540	60	2,320	53	8,175	2	14
2023	129	7,761	23	333	40	5,755	58	1,656	8	17

※ 출처 : 2026년 2월 2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4) 기부자 예우(안 제6조)

○ 현행 기부자 예우 규정에서 명예의 전당(현행 제5조제1호) 규정은 서울시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현행 예우 대상자(제5조 본문 중)는 “기부 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부자”로 확대(안 제6조제2항)하고 있음.

현 행	전 부 개 정 안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	< 삭 제 >

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서울특별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적인 예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이는 조례의 중복 규정 삭제로 체계를 정비하고, 예우 대상을 '기부자' 전반으로 확대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기부자" 예우 대상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안 제6조제2항 본문), 기부자 명단 공지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 여부 추가 규정 필요(안 제6조제2항제3호),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규정 필요(안 제6조제2항제4호) 등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 번째로, 안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예우 대상을 “기부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기준 없이 “기부자”라고 하면 단돈 천 원을 기부한 사람도 예우 대상이 되므로 고액 기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기부 금액이나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두 번째로, 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기부자 명단 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 사실과 명단은 개인정보로,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기부자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세 번째로,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기부자 예우로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운영’의 범위가 서울시 직영, 위탁 또는 출자·출연 기관 시설까지 포함하는지와 ‘문화예술·복지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용 편의 제공’도 어떤 이용 편의 제공을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 범위가 모호함.
- 이는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명확성의 원칙**”은 법령은 행정과 사법(司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음(헌재 1992.4.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001.6.28. 99헌바34, 판례집 13-1, 1255 참조).
- 또한, ‘복지시설’은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없고, 사전적 의미로는 “국민의 사회 복지를 위한 시설”로,<sup>3)</sup>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은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은 이용자 자격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 일반 기부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복지시설’이라는 불확정 개념 대신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참조(최종방문 2026년 3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 ‘문화예술시설’도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없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문화예술’을 정의하고 있고, 제3호에서 ‘문화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바, ‘문화시설’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더욱이, 안 제6조제2항제4호의 “이용 편의 제공”이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의미한다면, 이는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 관련 조례에 별도의 감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다만, 행정국은 문화·복지시설 이용 편의 제공(안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 올해부터 서울시 기부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업·단체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 대관, 열린 공간(광장, 공원 등) 사용 협조와 통합 홍보 등 행정적 지원 제공 중이며, 개인 기부자의 경우 미술관, 공원 등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을 소관 부서와 논의 중에 있다고 하고 있음(2026년 2월 2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참조).

## 5) 기부자 예우 사후관리(안 제7조)

○ 안 제7조(기부자 예우 사후관리)는 예우자의 위법행위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된 경우 예우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우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차단하고, 기부자 예우에 대한 공신력과 기부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현 행	전 부 개 정 안
<p>&lt; 신 설 &gt;</p>	<p>제7조(기부자 예우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우를 받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li> <li>2. 범법 또는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li> <li>3. 그 밖에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로 정하는 경우</li> </ol>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기부자 예우 중단 규정이 없지만, 서울시 자치구 4개와 기초단체 15개 조례에서 중단 규정 있음.

- 자치구(4) :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 타 지자체(15) : 하남시, 안산시, 원주시, 충주시, 경산시, 김해시,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울주군,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대구 북구, 광주 남구, 전남 화순군, 경남 고성군
- 기속, 재량 여부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중단 요건은 공통적으로, ① 법령 위반·거짓 기부, ②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 야기, ③ 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임.

연번	지자체명	조례명	예우 중단 규정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p><b>제14조(인증 사후관리)</b>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u>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령을 위반하여</u> 인증을 받은 경우</li> <li>2. <u>거짓으로 인증</u>을 받은 경우</li> <li>3. 인증을 받은 사람이 <u>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u>한 경우</li> <li>4. 그 밖에 <u>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u>한 경우</li> </ol>
2	경기 하남시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6조(기부자 예우)</b> ② 시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u>를 한 경우</li> <li>2. <u>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u>한 경우</li> <li>3. 그 밖에 <u>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u>한 경우</li> </ol>
3	충북 충주시	충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12조(기부자 사후관리)</b>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u>를 받은 경우</li> <li>2. <u>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u>한 경우</li> <li>3. 그 밖에 <u>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u>한 경우</li> </ol>

※ 출처 : 2026년 1월 9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특히, 최근 ‘서울시립 김○○도서관’ 명칭을 두고 논란이 있는바, 예우자 사후 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예우 대상자의 도덕성과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립 김○○도서관’은 서울시 서대문구(북가좌동 479)에 짓고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 비용 675억원 중 300억원을 기부한 MBK 파트너스 김○○ 회장의 이름을 도서관명에 병기하는 것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승인하였음. 그러나, 최근 MBK가 자금난에 빠진 홈플러스 대해 자구 노력 없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신청 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아 수십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망하기 직전까지 투자를 받은 후 ‘떡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음. 이에 경영 손실을 떠안게 된 투자자들은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소하였음. 이에 논란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공공도서관에 붙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sup>4)</sup>

○ 다만, 안 제7조제3호는 “그 밖에 부적절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바, 시행규칙을 통해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 판단 기준을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하고,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와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시각에서 납득 가능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우 철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그 밖에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하는 경우

---

4) 서울신문, “MBK ‘홈플러스 떡튀’ 비판받는데 ... ‘서울시립김병주도서관’ 명칭 논란”, 2025년 4월 18일자; 경기일보, “13일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 ‘김병주 도서관’ 명칭 논란 재점화”, 2026년 1월 8일자 참조.

## 6) 기부심사위원회(안 제8조 ~ 제11조)

### ①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현행 제6조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6조제3항은 기부자의 예우(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를 (안 제8조) 삭제하고, 법(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안 제8조제1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 표창자 선정(제2호), 기부자 예우(제3호), 그 밖의 사항(제4호) 등 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 행	전 부 개 정 안
<p>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와 제5조제6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물 설치의 장소 및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p>③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p>	<p>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li> <li>2.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자 선정에 관한 사항</li> <li>3.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li> </ol>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 제5조제6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붙는 “등”은 보통 그와 밀접한 부수 사항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확장되지만, 그 자체로 법령이 예정하지 않는 새로운 심의·의결 기능까지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법률우위 및 포괄위임 원칙과 충돌될 우려가 있음.

※ 대법원은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077판결 참조).

○ 그러나, 법 제5조제3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심사”에 한정하고 있고, 이는 기부자의 적정성·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사전적 규제·통제 성격인 반면, “유공자 표창자 선정”이나 “기부자 예우”는 기부 이후의 사후적 인센티브 성격으로, 목적과 성격(법령의 범위)이 다르다고 하겠음.

- 그럼에도, 이를 조례로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이 규정한 위원회 기능을 사실상 변경·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대법원 판례는 법률에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한 조례로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판결)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210면 참조).

-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공자 표창자 선정”이나 “기부자 예우” 등의 사항은 법령상의 구속력 있는 ‘심의’가 아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자문’ 사항으로 규정은 가능하므로, 위원회 본연의 접수 심사 기능과 사후적인 장려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위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하는 수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②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안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 규정은 조문 위치를 조정(제9조 → 제11조)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항(제2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소집권자 및 절차,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전 부 개 정 안
<p>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와 명예의 전당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u>&lt;삭 제&gt;</u></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다만,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본 개정안 제11조제2항에서도 “과반수의 출석으로”라고 하여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의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에서는 출석 회의 원칙의 예외인 서면 회의 규정이 없는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 서면 회의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위원회의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이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함. 이 경우 서면결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의 운영이 형해화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유는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함(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230면 참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구분	일시	주요 내용	참석 인원	대면 또는 비대면	수당 지급 현황
2023년	2.23.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4건)	10	비대면	350천원
	3.29.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22건)	8	비대면	700천원
	4.20.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9건)	9	비대면	350천원
	5.25.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4건)	8	비대면	420천원
	6.29.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6건)	9	비대면	350천원
	7.27.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0건)	9	비대면	490천원
	9.25.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23건)	9	대면	750천원
	10.30.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9건)	9	비대면	350천원
	11.30.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21건)	9	비대면	700천원

구분	일시	주요 내용	참석 인원	대면 또는 비대면	수당 지급 현황
	12.26.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3건)	9	비대면	490천원
2024년	1.31.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6건)	9	비대면	350천원
	2.28.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0건)	9	비대면	490천원
	3.27.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4건)	9	비대면	490천원
	4.26.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7건)	9	비대면	490천원
	6.3.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8건)	9	비대면	350천원
	6.28.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5건)	9	비대면	350천원
	7.26.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2건)	9	비대면	490천원
	8.6.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건)	9	대면	900천원
	8.28.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1건)	9	비대면	490천원
	9.11.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3건)	7	대면	900천원
	9.26.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1건)	9	비대면	490천원
	10.24.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0건)	9	비대면	490천원
	11.22.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7건)	10	비대면	490천원
	12.19.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1건)	10	비대면	490천원
2025년	1.23.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4건)	10	비대면	350천원
	2.21.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9건)	10	비대면	350천원
	3.20.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20건)	9	비대면	700천원
	4.24.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42건)	11	비대면	700천원
	5.22.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1건)	10	비대면	490천원
	6.26.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6건)	9	비대면	350천원
	7.24.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0건)	10	비대면	490천원
	8.21.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1건)	10	비대면	490천원
	9.18.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4건)	9	비대면	490천원
	10.21.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6건)	9	비대면	490천원
	10.28.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자 심사	7	대면	750천원
	11.27.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12건)	10	비대면	420천원
	12.23.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사(7건)	10	비대면	350천원

※ 출처 : 2026년 2월 13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③ 자구 수정 등(안 제9조~제10조)

-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와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는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비문(悲門)과 중복 표현을 개선하여 조례의 가독성·법체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개정안 세부내역

현 행	전 부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포함한 제2항 : 위원장은 제3항 :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임명하거나 위촉 제5항 : 기부심사업무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 제>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임명 또는 위촉 기부심사 업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 위원장은 사무를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7) 부칙

- 안 부칙은 시행일(안 제1조), 일반적 경과조치(안 제2조), 위원회 경과조치(안 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부칙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종전의 법령의 집행 전반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조례를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함.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를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도적 조치를 “경과조치”라고 함(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313면 참조).

- 또한, 안 부칙 제3조 위원회 경과조치는, 조례의 전부개정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의 법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 다만,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를 단서(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전 부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u></p> <p><u>제3조(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u></p>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의 조례 반영, 조례의 체계를 자치 법규 입안 기준에 맞춘 정비를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명시, 기부자 예우와 철회 규정 마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기능 구체화 등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기부자 예우 규정(안 제6조제2항)에서 “기부자” 예우 대상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과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안 제8조)에서 상위법이 규정한 위원회 기능의 사실상 변경·확대로 법령 위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위원회 회의(안 제9조)에서 서면회의 규정 신설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